TAX007 WWW.TAX007.CO.KR

연말정산소식

제 1 호
2015년 1월 1일

(100-160) 서울시 중구 퇴계로28길 8, 201호(남학동, 만수빌딩) www.tax007.co.kr TEL:2279-0246/0224 FAX:2279-0240

2014년 귀속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올해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꼼꼼이 준비하신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이제 2014년도 지급된 월급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하는 시기와 주실 자료의 내용, 그리고 달라진 연말정산의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지하식세무사)

1. 연말정산자료를 주셔야 하는 데드라인

(1) 연말정산은 2월분 급여를 줄 때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소득공제신고서와 소득공제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출력하여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데드라인은 1월 31일입니다.

(2)연말정산 후 환급 및 추가납부금액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연말정산이 끝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고객회사에 보내드립니다. 직원들은 본인의 내역을 확인해 주시고, 특이사항이 없으면 세무서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2. 연말정산자료는 무엇?

(1)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www.yesone.go.kr)을 이용하세요.

공인인증서를 갖추고 가입된 분은 본인과 부양가족동의를 받아서 일괄출력해 주시면 연말정산이 수월해 집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은 **2015년 1월 15일부터**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및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소득공제,장기주식형저축공제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공합니다.

○ 홈페이지에서 제공하지 않는 소득공제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일부는 제공됩니다.)**
- **의료비 중 안경구입비, 장애인보장구·보청기 구입비용,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교육비 중 유치원 교육비, 보육시설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학원·체육시설 교육비,**
- **국외교육비,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및 장애인특수 교육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

(2)간소화시스템 가입 없이 준비하는 경우 필요서류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가입하지 않고 서류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해당하는 금융기관, 동사무소, 기부금영수증발행단체 등에서 발부받아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①기본공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추가공제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③연금계좌세액공제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④보험료세액공제 : 보험료납입증명서 ⑤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납입영수증, 의료비부담명세서 ⑥교육비세액공제 : 교육비납입증명서,보육료납부영수증,학원교육비납입증명서 등 ⑦장애인특수교육비세액공제 : 장애인특수교육비납입증명서,사회복지시설입증서류

⑧주택자금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등

⑨기부금세액공제 : 기부금영수증

⑩월세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서, 월세납입송금내역

⑪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소득공제:공제부금납입증명서

⑫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현금영수증사용금액확인서,학원수강료지로납부확인서

⑬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

⑭장기주식형저축소득공제:장기주식형저축납입증명서

3. 연말정산시기

연말정산하여 추가납부하는 금액이나 환급받는 금액은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 2월분 급여 지급시 환급금액은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하고 추가납부분은 급여에서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4. 지급명세서제출시기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자는 3월10일까지이고, 일용근로, 기타 등의 소득은 2월말일까지입니다. 따라서 2월말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 연말정산자료는 늦어도 1월 31일까지는 주세요. 첨부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직원이 작성하고 날인해서 회사에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도록 해주세요.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에 대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2) 연말정산자료는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것보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가입하셔서 출력해 주시는 것이 쉽고 편합니다.

(3)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기관에서 필요한 영수증을 챙겨주세요

(4) 부양가족은 1994.1.1.이후 출생자(20세이하)거나 1954.12.31.이전 출생자(60세이상)로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14.12.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안)

※ 근로소득자는 신고서에 소득·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소속 회사 등)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근로소득 세액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자에게 즉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득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처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 -
세대주 여부	[ ]세대주 [ ]세대원	국 적	(국적 코드 :)
근무기간	~	감면기간	~
거주구분	[ ]거주자 [ ]비거주자	거주지국	(거주지국 코드 :)
인적공제 항목 변동 여부	[ ]전년과 동일 [ ]변동	※ 인적공제 항목이 전년과 동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Ⅰ. 인적공제 및 소득·세액공제명세	인적공제 항목					각종 소득·세액 공제 항목										
	관계코드	성 명	기본공제		경로우대	자료구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부금
	내·외국인	주민등록번호	부녀자	한부모	장애인		건강·고용 등	보장성			신용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직불카드 등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비 제외)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이용액	
	인적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적습니다. (자녀: 명)					국세청										
						기타										
	0		○			국세청										
		(근로자 본인)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국세청										
		-				기타										

유의사항

1.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구 분	관계코드
소득자 본인 (소법 § 50 ① 1)	0	소득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① 3 가)	1	배우자의 직계존속 (소법 § 50 ① 3 가)	2
배우자 (소법 § 50 ① 2)	3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소법 § 50 ① 3 나)	4	직계비속(코드 4 제외) (소법 § 50 ① 3 나)	5*
형제자매 (소법 § 50 ① 3 다)	6	수급자(코드1~6제외) (소법 § 50 ① 3 라)	7	위탁아동 (소법 § 50 ① 3 마)	8

*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 관계코드 4~6은 소득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관계를 포함합니다.

2. 연령기준

- 경로우대: (. . .) 이전 출생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공제)

3. 부녀자 공제란에는 여성근로소득자 본인에 한정하여 그 적용 여부를 표시합니다.

4. 장애인 공제란에는 다음의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구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해당코드	1	2	3

5. 내·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국적을 적으며 국적코드는 거주지국코드를 참조하여 적습니다.

6. 직불카드 등란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전통시장사용분과 대중교통비용분 포함된 금액은 제외)을 적습니다.

구분		지출명세			지출구분	금 액	한도액	공제액
Ⅱ.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보험료 (국민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직원연금 등)	국민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국민연금보험료 외의 공적연금보험료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연금보험료 계						
Ⅲ.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고용보험		종(전)근무지	보험료		전액	
				주(현)근무지	보험료		전액	
		보험료 계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차입		원리금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거주자 차입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2011년 이전 차입분	15년 미만	이자 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15년~29년				
				30년 이상				
			2012년 이후 차입분(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 상환 대출				
				기타 대출				
		주택자금 공제액 계						
Ⅳ. 그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2000년 이전 가입)				납입금액		불입액40%와 72만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계						
	투자조합 출자 등	2012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3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2014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투자금액		작성방법 참조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① 신용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② 직불·선불카드(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③ 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제외)			사용금액			
		④ 전통시장사용분			사용금액			
		⑤ 대중교통이용분			사용금액			
		계(①+②+③+④+⑤)						
		⑥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3년)			사용금액			
		⑦ 본인 신용카드등사용액(2014년)			사용금액			
		⑧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3년)			사용금액			
		⑨ 본인 추가공제율사용분(2014년 하반기)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출연금액		작성방법 참조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삭감액		작성방법 참조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작성방법 참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구분		세액감면・공제명세			세액감면・공제 명세					
Ⅴ. 세액감면 및 공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목적	[ ]정부간 협약 [ ]기술도입계약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 ]조세조약 상 감면						
			기술도입계약 또는 근로제공일			감면기간 만료일				
			외국인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접수일		제출일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상 면제		접수일		제출일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취업일		감면기간 종료일			
	세액공제	공 제 종 류			명세		한도액	공제대상금액	공제율	공제세액
		특별세액공제	연금계좌	과학기술인공제	납입금액		작성방법 참조		1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금액					
				연금저축	납입금액					
				연금계좌 계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12%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보험료 계						
			의료비	본인・65세 이상자・장애인	지출액		작성방법 참조		15%	
				그 밖의 공제대상자	지출액					
				의료비 계						
			교육비	소득자 본인	공납금(대학원 포함)		전액		15%	
				취학전 아동 (명)	유치원・학원비 등		1명당 300만원			
				초・중・고등학교(명)	공납금		1명당 300만원			
				대학생(대학원 불포함) (명)	공납금		1명당 900만원			
				장애인 (명)	특수교육비		전액			
				교육비 계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액		작성방법 참조		100/110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초과	기부금액				15% (25%)	
				법정기부금	기부금액					
				지정기부금	기부금액					
				기부금 계						
		외국납부세액			국외원천소득					
					납세액(외화)					
					납세액(원화)		-			
					납세국명		납부일			
					신청서제출일		국외근무처			
					근무기간		직책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이자상환액		30%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액		1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Ⅵ. 추가 제출 서류

1.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제출 여부(○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2.종(전)근무지 명세	종(전)근무지명		종(전)급여총액	종(전)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
	사업자등록번호		종(전) 결정세액	
3.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 제출 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연금계좌, 주택마련저축 등 소득・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월세액・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 명세서 제출여부 (○ 또는 × 로 적습니다)			제출 ( ) ※ 월세액,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세액 공제를 신청한 경우 해당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5. 그 밖의 추가 제출 서류	① 의료비지급명세서 ( ), ② 기부금명세서 ( ), ③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유의사항

1. 근로소득자가 종(전)근무지 근로소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릅니다.
2. 현 근무지의 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등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공제금액란은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1.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등이 부모·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경우 부양가족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므로 신고서에 적지 않습니다.
3. 부녀자공제는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한해 연 50만원을 공제합니다.
4. 한부모가족 소득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연 100만원을 공제합니다. (부녀자공제와 중복 시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5. 장애인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장애인인 해당 부양가족 1명당 연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6. 인적공제항목은 해당란에 "○"표시를 하며,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은 공제를 위하여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적습니다.
- 각종 소득공제 항목에서 보험료에는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포함하고,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7. 국세청 자료란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공제 명세의 각 소득공제항목의 금액을 적습니다.
8. 기타 자료란은 소득자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 외의 것을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금액을 적습니다
9. 소득·세액공제는 서식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서대로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특별소득공제명세 작성방법

주택자금	일반사항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의 납입금액 또는 상환액을 적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 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기관차입분, 거주자로부터 차입분을 구분하여 작성하며 공제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원금상환액은 제외합니다)을 적습니다. 2011년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 15년 미만, 15년 이상 29년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 30년 이상(「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0항제5호 포함)으로 구분하여 적고, 2012년 이후 차입분(상환기간 15년 이상)은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분과 기타 상환분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개인연금저축공제	공제금액은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연 12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소득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투자조합 출자공제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을 적습니다. 공제금액은 출자금액 등의 10%까지 공제되나,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투자하는 경우 2012년에는 출자금액 등의 20%, 2013년에는 출자금액 등의 30%, 2014년 이후 출자금액 등의 5천만원 이하분은 50%, 5천만원 초과분은 30%까지 공제됩니다.		
	공제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2012년 출자·투자분	10%(2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40%
		2013년 출자·투자분	1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40%
		2014년 이후 출자·투자분	10%(50%,30%)	해당 과세연도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1. 사용금액란에는 카드사 등에서 발급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 따른 공제대상액의 합계액[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사용금액에는 사업관련비용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 2.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사용금액도 포함됩니다. 다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에 한정합니다. 3. 공제금액: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의 합계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①의 금액과 ②의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①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② 대중교통이용분(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전통시장·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 제외)× 30% ④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합계액 - 전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15%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15% • 최저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30% ⑥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등사용액이 2013년 신용카드등사용액보다 많은 자의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직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 사용분 제외, 이하 '추가공제율사용분' 이라함)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4.7.1.~2014.12.31.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10% •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 : (2015.1.1.~2015.6.30.까지의 추가공제사용분 - 2013년 추가공제율사용분×50%) × 10%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우리사주출연금 중 연 4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합니다.			
우리사주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 공제한도: (종합소득금액 - 법정기부금) × 30%			

인적공제 및 소득공제 명세 작성방법

그 밖의 소득공제 작성방법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하여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임금삭감액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임차인이 지급한 목돈 안 드는 전세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임대인이 이자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해당 과세기간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을 기준으로 40%까지 공제됩니다. 해당 공제를 신청 시에는 이 서식 제7쪽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 공제명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액공제 작성방법

외국납부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과 ②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중 작은 금액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자동차·생명·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란에는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에 납입한 금액을 적습니다.
의료비	의료비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의료비입니다. 2. 근로자인 거주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지급액이 공제액입니다. 다만, 그 밖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뺍니다. 3. 그 밖의 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공제하되, 연 700만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4. 의료비공제금액은 근로자인 거주자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나.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을 포함합니다)을 구입하고 지급한 비용 다. 장애인의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보장구에 한합니다) 및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해야 합니다)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료기기의 경우 의료기기를 명시한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라.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1명당 연 50만원 한도) 마. 보청기 구입비용 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
교육비	1. 공제대상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를 위하여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한 입학금, 수업료,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급식비·교과서대금·방과후 학교 및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초·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용(중·고등학생), 국외교육비 등을 말합니다. 2.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를 말합니다.
기부금	해당 기부금란에 기부금납입영수증의 기부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1. 정치자금기부금(「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같은 법에 따른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100분의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2.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① 법정기부금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 ② 지정기부금(「소득세법」 제59조의4제4항) 한도액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10%] +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20%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30%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한도 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월세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가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유의사항

1. 공제항목별로 연간 지출금액(보장성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신용카드·주택마련저축 등의 경우 근로소득자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 등을 적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제한도 등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소득공제 또는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되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연 12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표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공제항목 중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서 서식을 수정하거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합니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첨부서류
기본공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이 주거를 함께 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입양관계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추가공제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수첩,복지카드) 사본*
특별소득 공제	주택자금	1.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취득한 주택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
개인연금저축공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개인연금저축통장 사본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공제부금납입증명서
투자조합출자공제		출자등소득공제신청서,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신청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 대중교통 이용분 증빙자료(승차권 등)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목돈 안 드는 전세 이자상환액증명서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
그 밖의 공제		공제 관련 서류 등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납입확인서(세액공제용)
특별 세액 공제	보험료	보험료납입증명서·보험료납입영수증
	의료비	1. 의료비지급명세서 및 다음에 해당하는 영수증 가. 의료기관·약사 등이 확인한 것 나. 안경 등의 경우에는 안경사가 확인한 것 다.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라. 의료기기 구입 또는 임차비용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확인한 것 및 의사 등의 처방전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행하는 의료비부담명세서
	교육비	1. 교육비납입증명서 2.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구입 증명서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의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의 구입비가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시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국외유학인증서 등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기부금	기부금명세서 및 기부금영수증(발급기관이 기부자의 성명, 기부금액 및 기부일 등 기부명세를 적고, 확인한 것에 한정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등본

유의사항

※ "*"표시된 첨부서류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그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음 연도부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표등본은 공제대상배우자, 공제대상부양가족, 공제대상장애인 또는 공제대상경로우대자의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소득·세액 공제명세를 첨부서류로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은 정부민원포탈 민원24(www.minwon.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월세액 ·[ ]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 세액공제 명세서

1. 인적사항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 (전화번호 :)	
	⑥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2.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

⑦ 임대인 성 명 (상 호)	⑧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⑨ 주택 유형	⑩ 주택 계약 면적(㎡)	⑪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	⑫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⑬ 연간 월세액(원)	⑭ 세액공제액 (원)
					개시일	종료일		

※ ⑨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⑫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3.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

1) 금전소비대차 계약내용

⑮ 대주(貸主)	⑯ 주민등록번호	⑰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⑱ 차입금 이자율	원리금 상환액			㉒ 공제금액
				⑲ 계	⑳ 원금	㉑ 이자	

2) 임대차 계약내용

㉓ 임대인 성 명 (상 호)	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㉕ 주택 유형	㉖ 주택 계약 면적(㎡)	㉗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㉘ 계약서상 임대차 계약기간		㉙ 전세보증금 (원)
					개시일	종료일	

※ ㉕ 주택유형 구분코드 - 단독주택: 1, 다가구: 2, 다세대주택: 3, 연립주택: 4, 아파트: 5, 오피스텔: 6, 기타: 7
※ ㉖ 계약서상 임대차계약기간 - 개시일과 종료일은 예시와 같이 기재 (예시) 2013.01.01.

작 성 방 법

1. 월세액 세액공제나 거주자 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세액공제에 대한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해당 임대차 계약별로 연간 합계인 월세액·원리금상환액과 소득·세액공제금액을 적으며, 공제금액이 "0"인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⑨, ㉕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기타 중에서 해당되는 **주택유형의 구분코드**를 적습니다.
4. ㉙ 전세보증금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의 전세보증금을 적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근로자 확인사항>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다음의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경우 예, 아니오 란에 간단하게 ○으로 기입하시고 확인란에 확인자를 작성하고 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단,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입할 필요가 없으며 근로자안내문을 확인한 후에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자 : **(서명 또는 인)**

<table>
<tr><th></th><th>확 인 사 항</th><th>예</th><th>아니오</th></tr>
<tr><td>1</td><td>2014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신가요?</td><td></td><td></td></tr>
<tr><td>2</td><td>2014년 12월 31일 현재 법적배우자가 있으신가요?</td><td></td><td></td></tr>
<tr><td>3</td><td>기본공제를 받고자 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있으신가요?</td><td></td><td></td></tr>
<tr><td>4</td><td>3번 항목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증명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알려주시길 바라고 다음의 항목에 대한 추가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부양가족 현황>
<table>
<tr><th rowspan="2">관계</th><th rowspan="2">이름</th><th rowspan="2">주민등록번호</th><th colspan="2">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여부</th></tr>
<tr><th>예</th><th>아니오</th></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r>
</table>
※정규직은 3,333,333원의 연급여이하이면 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임.
※금융소득금액이 20,000,000원 이하이면 소득금액 1,000,000원 이하임.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거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로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td><td></td><td></td></tr>
<tr><td>5</td><td>부양가족이 다른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습니까?</td><td></td><td></td></tr>
<tr><td>6</td><td>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습니까?</td><td></td><td></td></tr>
<tr><td>7</td><td>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하신 서류 외 기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까?</td><td></td><td></td></tr>
<tr><td>8</td><td>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자료가 있습니까?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가 출력가능하니 자료가 있는 경우 제출바랍니다.)</td><td></td><td></td></tr>
<tr><td>9</td><td>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공제는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입사원인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세양식으로 자료를 출력하여 근로자로 재직한 이후에 지출한 금액만 제출했습니까?</td><td></td><td></td></tr>
<tr><td>10</td><td>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② 금융기관 등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했습니까?</td><td></td><td></td></tr>
<tr><td>11</td><td>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차입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차입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됐습니까?
④ 금융기관 외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입주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이며 이자(연 이자율 2.9% 이상)를 지급하고 있습니까?</td><td></td><td></td></tr>
<tr><td>12</td><td>월세에 대해서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임차인이 근로자 본인이고 무주택세대주입니까?
②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했습니까?
③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입니까?</td><td></td><td></td></tr>
</table>

	④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동일합니까?		
1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 ① 주택의 명의와 차입금의 명의가 근로자 본인 것입니까? ②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입니까? ③ 근로자본인의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④ 2013년 이전에 차입한 경우 취득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입니까?(2014년 이후에 차입한 경우 국민주택여부 상관없음) ⑤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 기준시가(매입가액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시하는 가액을 말함)가 4억원 이하입니까? 단, 2013년 이전 차입한 경우의 주택 취득시 기준시가는 3억원 이하입니까? ⑥ 2014년 12월 31일 현재 세대 전원의 주택이 1채입니까? ⑦ 2014년도 중 세대 전원의 주택이 2채가 있었다면 그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합니까?		
14	2014년에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한 경우가 있나요? (※ 다른 회사에 근무를 했다면 해당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